

[미성년계약의 경우 - 계약취소(미성년자 할부구입 책)

○○○ 취소 통지

◎ 수신인 : □□출판 대표 ○ ○ ○
서울시 송파구 000로 000-0
02-000-0000

◎ 발신인 : 소시모
서울시 종로구 000로 00, 000호
010-0000-0000

계약일자 :

구입물품 :

구입금액 : 원 (할부)

취소사유

1.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의 자 ○○○(만○○세)가 20 하교하던 중 학교 앞에서 문화서적시리즈 1 세트를 월15,000원씩 20개월간 납입하기로 하고 귀하에게 구입하였습니다.
3. 그러나 본인의 자 000는 미성년자로서, 민법상 행위무능력자가 책을 구입하는 법률행위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위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물품을 구입하였으니 이를 취소합니다.
4. 또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본인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하며, 인도받은 서적을 반환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우체국에 가는 날짜를 씁니다.) 20 년 월 일

(위의 발신인과 같은 이름을 쓰고 도장 날인을 합니다.) 상기 계약자: (인)

※ 작성이 끝나면 동일한 문서를 2부 더 복사하여 총 3매를 작성합니다.